

[서식 예]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(숙박업)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신 청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같은 해 〇. 〇.까지(2개월)의 숙박업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원고는 20○○. ○.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소재 "☆☆여관"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여 왔는 바, 피고는 원고가 20○○. ○. ○. ○. 00:30경 위 여관에 소외 김□□이 미성년자인 소외 이□□과 투숙하는 것을 받아 들였다는 이유로 20○○. ○. ○.자로 원고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



부터 같은 해 O. O.까지 2개월간 위 여관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처분의 위법성

피고는 영업정지 명령서에서 위 처분의 사유로 삼은 위 사실이 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1항 8호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「청소년 보호법」에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"로 한다고 하여 동법11조, 동시행규칙19조와 별표7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나 위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입니다

- 가)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김□□은 20○○. ○. ○. 22:00경 위 여관에 와서 종업원인 소외 고□□에게 투숙의사를 밝혀 숙박부에 기재하게 한 후 302호실에 투숙하게 하였는 바, 투숙당시의 위 고□□이 동숙자 유무를 물었는데 없다하여 1인 요금만 받은 후 혼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위 김□□은 투숙 후 4-50분 지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간 후 다음날 00:30분경 만 18세 되었다는 소외 이□□와 함께 다시 여관에 들어와 두 사람이 함께숙박한 것이 후에 밝혀졌지만, 두 사람이 함께들어 왔을 때는 위 숙박업소의 업주인 원고나 위 고□□ 모두 위 소외 이□□은 물론 위 김□□이 다시들어온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.
- 나) 가사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년의 남자가 성년에 가까운 성숙한 모습의 여자와 동숙하였는데 후에 여자의 연령이 만 18세 남 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, 그것이 바로 "청소년보호법 위반"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, 적어도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의 투숙자가 미성년이라든지, 또는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일 때가 바로 제대로 된 법 적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위 이□□이 법률상미성년임이 후에 밝혀졌다고 하여 이를 "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"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위 처분은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- 1. 갑제1호증의 1 공증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
- 1. 갑제1호증의 2 행정처분(영업정지)



1. 갑제2호증 숙박업신고증

1. 갑제3호증 사업자등록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제소기간 | ※ 아래(2) 참조 |
|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청 구 인 | 피처분자 | 피청구인 |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|
| 제출부수 |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| 관련법규 | 행정소송법 9 ~ 34조 |
| 비 용 | 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| | |
| 불복방법 및 기 간 | ・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 | | |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, 국가 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 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 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